

## 주요심결사례

2002. 7. 9.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엘지카드(주) 및 (주)엘지텔레콤의 부당한 경품류제 공행위 등에 대한 건(2002 유거0435)</p>	<p>엘지카드(주)는 65개 제휴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면서 “타 신용카드사 또는 유사한 업체와는 본 협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본 협약기간 동안 제3자에게 타 카드의 회원모집활동 및 장소 사용 등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하였고, 엘지카드(주), (주)엘지텔레콤은 경쟁사인 에스케이텔레콤이 5개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기존고객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 단말기 비용의 일정액을 할인 받고 할인 받은 금액은 카드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하여 갚아 나가는 기능의 신용카드인 “모네타카드”를 출시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엘지텔레콤플러스카드”라는 경쟁상품을 출시, 동 카드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2001. 11. 3일부터 2002. 1. 31일까지 경품제 공 행사를 실시하고 2002. 2. 20.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자동차 등 경품류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경품류를 제공할 것을 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p>	<p>▶ 부당한 경품류제 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2002. 7. 31.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2002조기0765)</p>	<p>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자신의 회원사중 하나인 영화제작사 AFDF-Korea(주)가 2001. 2. 8. 영화배우 유오성과 영화 &lt;가디언&gt;의 출연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지급하고 촬영준비를 하던 중 촬영시작일을 며칠 앞둔 2001. 3. 20. 유오성측으로부터 출연계약을 파기당하자 회원사인</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AFDF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1. 3. 27. 이사회에서 유오성에게 해당 영화의 출연을 권고하고, 만약 출연거부 시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기로 의결하였으며, 2001. 4. 11. 2차이사회를 열고 회원사에게 유오성의 캐스팅자제를 권고키로 하였으며, 2001. 4. 14. "연기자 유오성의 영화 &lt;가디안&gt; 출연계약 파기에 대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36개 회원사 공동명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또한, 2001. 4. 17. 제3차이사회를 열고 2001. 4. 21.까지 유오성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영화관련단체에 유오성의 영화출연 자제를 요청키로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유오성측으로부터 공개사과문을 접수하였으나, 2001. 5. 7.자 이사회에서 유오성과 AFDF가 합의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계약문화의 정착을 위해 당초 성명서상의 결의사항대로 이행키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제1호 위반</p>	
<p>(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2002조기 0758)</p>	<p>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주)SBS가 1999. 9. 19. 방송 예정인 정규프로그램 특집방송이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홍보성 행사로 추진되고 있지만 출연료가 현실성이 낮다는 이유로 1999. 7. 15. 회원 임시총회에서 회원사 소속 가수의 출연 거부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1998. 8. 12. 출연 예정 가수의 소속 회원사에게 동 결의내용을 통보하였고, 1999. 8. 6. (주)SBS에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차원에서 관련 프로그램부터 회원사 소속 가수의 출연을 자제하도록 권유하여 단체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주)문화방송에서 2001. 6. 17.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 중 "연예인 대 매니저 한일비교"의 내용(기획사와 가수의 진속계약을 노예계약으로 보도)이 기획제작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3. 비상임시총회에서 회원사 소속 가수와 연직자가 (주)문화방송에 출연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회원사에게 결의내용을 통보하였으며, 2001. 7. 4. (주)문화방송에 사과방송, 재 제작방송 및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01. 7. 7.부</p>	<p>▶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 행위 및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터 방송출연을 무기한 거부하였고, 2001. 8. 11.부터는 라디오 및 지방네트워크까지 확대하기로 결의, 회원사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또한 2000. 7. 28. 긴급이사회에서 최근 출시된 편집음반 중 현재 활동중인 가수의 히트곡을 수록한 음반이 출시되고 있어 독집음반이 판매되지 않는 음반판매의 기형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편집음반 출시를 위하여 타사에 자사의 음원 사용을 허락시 발표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곡은 편집음반에 수록되지 않도록 음원사용 허락을 하지 않을 것과 비회원사외는 음원을 공유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이를 회원사에 통보하였으며, 2001. 4. 20. 200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는 2001. 1. 1. 이후 발표된 음원을 통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하여 출시하거나 음원을 제공하는 회원은 제명기로 결의, 동 결의사항을 2001. 4. 30. 소속 회원사에게 통보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한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단체장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반유통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소매상협회의 단체장들과 2001. 5. 28.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기존 독집음반의 판매를 저하시켜 유통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편집음반의 문제점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편집음반의 가격을 CD 1개당 3,500원을 유지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권고함으로써 구성사업자와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p>	

2002. 8. 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경상남도태권도협회의 사업자수 제한행위에 대한 건(2002부사0276, 2002부사0417)</p>	<p>경상남도태권도협회는 2001. 2. 11. 개최된 제1차 시·군전무이사 회의에서 도장난립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협회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논의하고, 2001. 3. 17. 개최된 제1차 실행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2001. 4. 15.부터 신규 태권도장의 협회 등록금을 종전 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도장단체등록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으며, 2001. 9. 15. 개최된 2001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에</p>	<p>▶ 사업자수 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도장단체등록규정」 제1조(목적) 및 제7조(등록금)제1항에 규정된 태권도장업 시장에서의 현</p>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서 도장난립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신규 태권도장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의결하여 2002. 1. 15.부터 시행하는 등 경상남도지역내 태권도장업 시장에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2호 위반	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고, 동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3단 × 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2. 8. 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사)한국야구위원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 등에 대한 건 (2002조기0822)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는 자기의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약' 과 구단과 선수간에 체결되는 '야구선수계약서' 를 제정·시행하면서, 해외진출선수의 국내복귀 제한, 지명제도 중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한국야구위원회의 입장료 결정, 다년연봉계약 체결금지 등과 같은 프로야구 운영에 관한 제도를 구성사업자인 프로야구구단과 그 거래상대방인 선수들에게 시행해 옴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정되어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	▶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제110조(계약교섭권 보유기간)제2항 및 「야구선수계약서」 제3조(참가활동보수),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제106조(지명)제2항,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제132조(입장료 결정)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 8개 음반제작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2조기0753)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에당엔터테인먼트, (주)대영에이앤브이, (주)와이비엠서울음반, (주)동아뮤직, (주)신촌뮤직, (주)우퍼엔터테인먼트, (주)디에스피엔터테인먼트는 1999년 가을부터 2000년 4월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환가무별관 7층에 위치한 (주)동아뮤직 사무실에 여러 차례 모여, 자신들이 생산한 음반을 직접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방법 대신 음반유통전문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판매하자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동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아이케이팝과 각각 체결한 음반판매대행계약서 중 위반내용과 관련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주요심결사례**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대표들이 음반판매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를 통해서만 음반을 판매하기로 합의한 후 2000. 4. 27.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이사 이수만, (주)에당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 변두섭, (주)대영에이앤브이의 대표이사 유재학, (주)와이비엠서울음반, (주)동아뮤직의 이사 문기수, (주)신촌뮤직의 이사 장고웅, (주)우퍼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 김광환, (주)디에스피엔터테인먼트의 주주 이연미 등이 각각 1,000만원씩 출자하여 자본금 1억원의 음반유통판매회사인 (주)아이케이팝을 설립, 2000. 4. 28.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각각 (주)아이케이팝과 음반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신들이 생산한 음반은 동 회사를 통해서만 판매하기로 하였고, 동 계약을 체결한 이후 특판 또는 음반 판매량이 극소수이거나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어 대량 유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들이 생산한 음반을 (주)아이케이팝을 통하여 판매하는 등 서로 합의하여 자신들이 생산한 음반을 특정 음반판매회사만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국내음반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4호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 347백만원</li> <li>· (주)에당엔터테인먼트 : 242백만원</li> <li>· (주)대영에이앤브이 : 152백만원</li> <li>· (주)와이비엠서울음반 : 112백만원</li> <li>· (주)동아뮤직 : 44백만원</li> <li>· (주)신촌뮤직 : 34백만원</li> <li>· (주)우퍼엔터테인먼트 : 24백만원</li> <li>· (주)디에스피엔터테인먼트 : 39백만원</li> </ul>

2002. 8. 12.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주)닷네임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전보0838)</p>	<p>(주)닷네임코리아는 2001. 8. 3.부터 2002. 5. 15.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웹브라우저의 성능에 따라 40bit, 56bit, 128bit로 암호화 수준이 결정되는 美 Entrust사의 표준SSL인증서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 웹브라우저의 성능과 무관하게 128bit로 암호화되는 제품인 Verisign사의 SGC 기능이 있는 Global Server ID와 같은 선상에 놓고 가격을 비교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 위반</p>	

2002. 8. 14.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주)티보테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2002조기0942)	(주)티보테크는 1998. 6. 11.~1999. 7. 24. 기간 중 계열회사인 (주)넥스트인스트루먼트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총 12회에 걸쳐 873백만원을 대여하면서, 원금은 1998. 6. 23.~2000. 3. 31. 기간동안 7차례에 걸쳐 전액 회수하였으나, 그 이자에 대해서는 1998년말에 4,320천원만을 미수수익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2000. 6. 30. 동 금액만을 수령함으로써, 정상금리를 적용할 경우 수령하여야 할 총 이자 17,389천원 중 13,069천원을 수령하지 않는 등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부당하게 (주)넥스트인스트루먼트를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	▶ 과징금 납부 : 5백만원